전남대학교 학생 포상 규정



[시행 2024.12.10] [전남대학교학교규정 제2064호, 2024.12.10, 제정]

전남대학교 062-530-107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전남대학교 학칙」제79조에 따라 학생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포상 종류) 포상은 정기 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구분한다.

제3조(포상 대상) ① 정기 포상은 입학 및 졸업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

- 1. 성적우수상: 성적우수 입학생 및 성적최우수 졸업예정인 학생 또는 성적우수생으로 성적평균평점이 3.75이상 인 학생
- 2. 공로상: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
- 3. 모범상: 학내·외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특별한 활동을 한 학생
- 4. 봉사상: 학교, 지역사회, 국가 및 인류를 위해 현저한 활동을 한 학생
- ② 수시 포상은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고 학생자치활동 등 학교 발전에 뛰어난 공로가 있는 학생으로 한다.

제4조(포상 추천 및 절차) ① 포상대상자는 대학(원)장이 지도교수의 의견을 참작하여 심사하고 총장에게 추천한다. 다만, 대학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학부에 소속된 학생은 소속 학부장이, 특수대학원 학생은 소속 대학원위원회에서 총장에게 추천한다.

- ② 학생자치활동 등 특별한 공로가 있는 포상대상자는 학생처장이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.
- ③ 기타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(부서)장이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.
- ④ 재학 중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⑤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- 1. 학점취득 조서(별지 제1호 서식, 성적우수상에 한함)
- 2. 공적조서(별지 제2호 서식)
- ⑥ 포상대상자가 있는 경우 추천인은 포상 예정일 2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상) ① 정기 포상은 입학식과 전기 및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수여하며, 수시 포상은 공적 발생 시 포상할 수 있다.

② 포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.

제6조(포상권자) 포상권자는 총장으로 한다.

제7조(이중포상 금지)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포상의 기록) 포상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학적부에 기록한다.

제9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부칙 <제2064호,2024.12.10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전남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.